

1.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

2. 제제대상사실

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42조, 「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」 제16조의 4 및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(최고한도 5억원)중 큰 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

2003.9.15.~2008.1.18. 기간 중 (●)●●●●●●●●와 ○○○에 대하여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13건, 총 12억 44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3억 53백만원 초과 하였음

3. 제제조치내용

제제대상	제제내용
임 원	문책경고 : 2명
직 원	견책 : 2명

< 관련법규 >

1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42조
2. 「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」 제16조의4
3.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6조